

# 영구임대주택



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## 지원대상

소득	<p>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(자산) 총자산 242,000,000원 이하 (자동차) 35,570,000원 이하 - ①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) 월평균소득 100%이하(1인120%, 2인110%) : 타목(2순위장애인) 월평균소득 70%이하(1인 90%, 2인 80%) : 나목(국가유공자 등) 마목(북한이탈주민), 바목(1순위장애인), 아목(아동복지시설퇴소자) 월평균소득 50% 이하(1인70%, 2인60%) : 차목(일반입주자)</li></ul>
자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자산기준적용 신분 :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1순위장애인, 아동복지시설퇴소자, 일반입주자</li><li>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(부채반영), 일반자산)가액 합산기준 2억4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,557만원이하</li></ul>
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</li><li>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이 70% (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%, 2명인 경우에는 80%)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※ 입주가격 및 소득기준 등은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요</li></ul>

##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

- 면적/임대료 전용 40㎡이하 / 보증금+월세 (시세의 30%수준)  
※국토부고시 '행복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등에관한기준'에  
따르며 평형별 차이가 있음
- 임대기간 최대50년(기본계약 2년, 2년마다 재계약(자격요건 충족(소득·자산) 시) 재계약 후 연장 가능
-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- 문 의 iH 콜센터(1522-0072), LH 콜센터(1600-1004)